

「장애인일자리 사업(복지일자리)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7월 6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7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7월 21일

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이 정 화

나. 제안이유

-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(복지일자리)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) 사 무 명 : 장애인일자리 사업(복지일자리)
- 2)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가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

나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

다)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

라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

3) 위탁사무

가)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, 관리

나) 장애인일자리 사업 직무 개발 및 참여자 배치, 사업운영 전반

4) 위탁기간 :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* 2027. 1. ~ 2029. 12.

5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2,167,200천원 * 2027년 예산 기준

(단위: 천원)

계	인건비	운영비	비고
2,167,200	2,080,800	86,400	

6)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

7)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6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
8) 부서의견

가)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「장애인일자리 사업 안내」 지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.

나)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,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. 또한 자체 일자리 연계 사업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.

다) 이에 장애인일자리 채용 및 채용인력 관리, 자원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의2, 「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,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
- 2)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동의안은

-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와 소득보장을 돕는 ‘장애인일자리 사업(복지일자리)’의 운영 전반을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환경정비, 급식 보조, 주차 계도 등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적절한 수요처에 참여자를 배치해야 하는 사업으로, 지역사회 내 탄탄한 복지 네트워크와 장애인 관련 실무 노하우를 갖춘 민간 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성과평가에서는 전 기관이 ‘우수’ 등급을 받았으나 감사 결과 대규모 인원 관리에 따른 서류 누락, 근태 관리 부실, 심한 장애인 직무 배치 미흡 등의 지적 사항이 발생한바,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행정 및 노무 실무 역량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동일 사례 반복 방지를 위한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요구됨.

-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(심한)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무가 최우선으로 개발·배치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, 본 사업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·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 음

5. 토 론 요 지: 없 음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